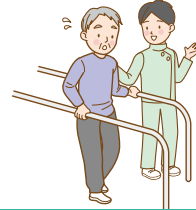


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
시설 등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

■ 개호노인보건시설

병세가 안정되어 병원에서 퇴원한 분 등이 재택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, 재활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케어와 개호를 받는 시설입니다.



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■ 개호노인복지시설

(특별양호노인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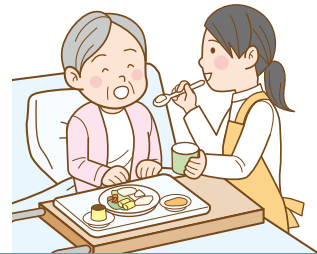
상시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분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. 식사나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와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.

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■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*

(특별양호노인홈)

상시개호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분이 입소하는 정원 30명 미만의 소규모 특별양호노인홈입니다. 식사나 배설 등 일상생활상의 개호와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.



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■ 인지증 (치매) 대응형 공동생활개호*

(인지증 (치매) 고령자그룹홈)

인지증 (치매) 고령자가 5~9명의 소수 인원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,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호나 신변처리의 돌봄서비스를 받습니다.



요지원 1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